

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FAQ(2차)

Q-1

(교육혁신) 사업공고 전 기 추진한 핵심분야와 관련된 대학체계 개편한 사항도 대학교육혁신 내용에 포함되는지?

A-1

○ 플랫폼에서 추진한 내용이 본 사업의 추진내용이 되는 것이며, 플랫폼 선정 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내용은 본 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

Q-2

(사업비) 신청액이 국고 300억 내외인데, 200억 신청해도 되는가?

A-2

○ 사업공고 기준금액을 준수해 주시길 바람

Q-3

(사업비) 지방비는 기초지자체에서 총당하면 안 되는가?

A-3

○ 지방비 총당(30%)은 광역지자체, 기초지자체에서 모두 가능함

Q-4

(사업비) 기존 지자체에서 지방비가 투입된 사업을 본 사업에 연계시킬 경우 지방비 30% 안에 포함되는지?

A-4

○ 기존에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본 사업 내에서 추진하고자 2020년 본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
○ 다만, 2020년 상반기에 이미 집행된 지자체 예산은 본 사업 신청을 위한 지방비에 포함되지 않음

Q-5

(신청) 사업신청서 공문제출시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지, 총괄대학에서 제출하는지?

A-5

○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제출 가능함

Q-6

(신청) 사업 신청 의향서 제출 이후 총괄대학 변경이 가능한지?

A-6

○ 사업 신청 의향서는 참여 광역지자체의 장과 총괄대학의 장으로 직인이 날인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함.
○ 총괄대학을 제외한 참여기관은 본 접수 시 변경 가능함

Q-7

(사업 간 연계) 사업 간 연계시 기초연구사업 등 개인 단위의 R&D 사업도 포함이 되는지?

A-7

- 연계 가능한 사업의 형태(개인, 기관단위 등)에 제한은 없음
- 다만, 핵심분야 혁신 및 대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해야 함